

# 美國 統一商法典의 信用狀規定과 信用狀統一規則適用上의 主要 爭點\*

姜元辰\*\*

- 
- I. 序論
  - II. 信用狀準據法の 選擇과 效果
  - III. 法 또는 統一慣習 適用의 二元化
  - IV. 主要 爭點에 대한 比較
  - V. 結論
- 

## I. 序論

代金決濟의 주요 수단인 信用狀去來 慣習은 1933년 이른바 국제상업회의소가 信用狀統一規則을 제정한 이래 1993년 제5차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고 國際統一慣習으로서의 位相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별도로 1952년 미국 統一商法典 제5편에 신용장규정을 成文化하여 나름대로의 신용장거래에 사용하여 왔고 1995년 國際慣習을 반영한 개정 信用狀法制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상거래의 관점에서 미국의 經濟 및 法과 制度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看過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독자적인 신용장법제는 미국 내에서 적용되고 있고 또한 법과 통일 관습의 選擇 如何에 따라 국제간 사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분쟁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法廷의 判決을 구할 경우 그 동안 많은 국내의 判例들도 미국의 판례를 참조

---

\* 本論文은 釜山大學校 期成會財源 研究費의 支援으로 이루어졌음.

\*\* 釜山大學校 貿易學科 副教授.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제 신용장통일규칙은 1995년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신용장법제의 개정  
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상거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뉴욕주와 같은 경우 미국통일상법전과 신용장통일규칙 등 二元化된 적용으로  
법 또는 통일관습 적용상의 문제가惹起될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는 현행의 법과 통일관습, 즉 미국통일상법전과 신용장통일규칙  
의 적용과 관련하여 준거법 선택의 효과와 兩分된 법과 통일관습의 적용에 대한  
주요 爭點을 비교 분석하여 법과 통일관습의 二元化에서 오는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信用狀去來時에 檢討하여야 할 素材를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또한 本 研究의 範圍는 미국의 법제인 미국통일상법전상의 신용장 規定과  
국제상업회의소 통일관습인 신용장통일규칙에 한정하고 研究 方法으로는 미국  
의 最近 判例와 文獻을 참조하여 적용 事例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 II. 信用狀準據法の 選擇과 效果

국제상거래에서 당사자 準據法을 明示的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當事者自治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정된 법에 따르게 되어 곤란한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오늘날 신용장거래는 대부분의 국가가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라 한다.)을  
신용장의 解釋基準으로 삼기로 하고 신용장 文面に 明示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UCP는 국제상거래를 행하는 당사자 사이의 私的 契約을 거래상의 規  
則(rule)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法律(law)과 같이 그 적용을 원하는 자나 원하  
지 아니하는 자를 막론하고 그 규칙에 따르게 하는 普遍的인 強制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UCP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본 규칙이 신용장문언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모든 회환신용장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증신용장을 포함하여)에  
적용할 수 있다. 신용장에 별도로 분명히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sup>1)</sup>라고 규정하고, 법적 拘束力을 갖기 위한 이른바 準

1) UCP 500, Article 1(1993).

據文言을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대금결제의 주요 수단인 신용장 거래 관습은 국제상업회의소가 1933년에 이른바 UCP를 제정한 이래 1993년 5차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고 국제적으로 普遍化된 통일규칙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UCP는 그 자체가 법은 아니지만 UCP가 은행실무에 記述될 경우에는 去來 慣習을 반영한다.<sup>2)</sup> 돌란(Dolan) 교수는 UCP는 상거래관습임이 분명하며,<sup>3)</sup> 美國 法院도 *Chuidian v. Philippine National Bank* 사건<sup>4)</sup>에서 UCP는 강행법이 아니라고 判示하고 있다. 그러나 UCP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미시간 대학의 화이트(White) 교수는 UCP는 국제거래에서의 훌륭한 법이라고까지 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UCP에 대한 法規性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強行法規가 아니고 任意法規이기 때문에 관계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特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UCP는 법률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한편 법원이나 仲裁判定部 역시 UCP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관습적인 化환신용장규칙이고 그것은 國際 妥協의 법으로 허용되는 완전한 수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종종 UCP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化환신용장에 UCP의 援用은 법원이 그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認識하여야 한다. 특히 UCP와 국내법이 衝突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여러해 재판관할권에 대한 紛爭이 있어왔다. UCP의 작업반은 이와 같은 법적 문제들은 UCP에서 논할 수 없으며 UCP는 국내법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법원이 듣고 결정하는 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임을 助言하고 있다.<sup>6)</sup>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의한 준거법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나라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음 수표에 관련된 거래는

2) *AMF Head Sports Wear, Inc. v. Ray Scott's All Am. Sports Club, Inc.*, 448 (F. Supp. 222 (D. Ariz. 1978)).

3)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p. 4.06[1].

4) 18 UCC Rep. Serv. 2d 1006, 976 F. 2d 561(CA9 1992).

5) James J. White,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UCC",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Winter 1995, p. 189.

6) Charles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p. 2.

어음수표법 또는 涉外私法에서 적용할 법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UCP 採擇銀行과 非採擇銀行 사이에 그 해석과 취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시된다. UCP 비채택국의 은행은 UCP 준거문언을 무시할 수도 있다. 또한 비채택국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는 UCP 준거문언이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준거법에 관한 論議는 판결이 내려질 특정국가 법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세계에 걸쳐 적용되는 다양한 법제에 대하여 상세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다.

신용장거래시 신용장의 해석 또는 지급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利害 相衝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용장의 발행지와 이행지 중에 어느 곳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의견이 달라진다.

먼저, 信用狀 發行地의 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Chuidian v. Philippine National Bank* 사건<sup>7)</sup>에서 피고인 필리핀 시민은 필리핀 국립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受益者였고 대금은 동 은행의 로스엔젤레스지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근거거래가 마르코스(Marcos) 전 필리핀 대통령의 隱匿財産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여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로스엔젤레스 피고는 그 신용장이 로스엔젤레스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trial court)에서는 거래가 필리핀 법에 준거하므로 지급거절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抗訴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제 9 순회법정인 항소법원은 신용장발행지가 이행지를 결정한다고 判示하였다.

만약 지급은행이 확인은행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금지급지에 대한 지시가 이러한 해석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여기서 로스엔젤레스 지점은 단지 통지은행이었다. 전통적인 준거법 선택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이 필리핀에서 발행되었고 수입자가 필리핀 시민이었으므로 그리고 마닐라가 단일의 이행지이기 때문에 필리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지급을 強制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判例는 미국법원이 내린 판결로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債務라는 관점에서 그 채무의 준거법은 行爲地의 法에 따르는 것으로 판시하고

7) 18 UCC Rep. Serv. 2d 1006, 976 F. 2d 561(CA9 1992).

있다. 다행히 당사자가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어려움은 없으나 당사자가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행위지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신용장 履行地의 法을 準據法으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Power Cuber International Ltd. v. National Bank of Kuwait S.A.K.* 사건<sup>8)</sup>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근거지를 둔 미국법인 Power Cuber는 쿠웨이트회사인 Hammouder에게 기계를 공급하는데 합의하고 쿠웨이트 국립은행이 매도인인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발행하였다. 그 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은 아니었다. 매매 당사자간에 분쟁이 야기되어 쿠웨이트의 매수인이 美貨 180,000 弗에 대한 請求訴訟을 제기하였다. 쿠웨이트 법원은 신용장에 의거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한 假押留(Provisional attachment)를 명하였다. 이에 Power Cuber는 쿠웨이트은행 런던 사무소를 상대로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데닝(Denning) 판사는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관계로 특별히 제안하여 준거법은 서류제시에 대해 발행은행을 대리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영국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신용장의 이행지를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사례이다.

또한 *Offshore International S.A. v. Banco Central S.A.* 사건<sup>9)</sup>에서 신용장발행인은 스페인의 중앙은행이고 동 은행의 뉴욕 환거래은행이 지급인이 되었다. 법원은 신용장발행은행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에 대하여 뉴욕이 지급장소이기 때문에 뉴욕법을 적용하고 신용장이 적용될 법체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것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實質的 關聯性이 있는 법체계가 준거법이 된다고 하고 중개은행(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매도인이 환어음을 직접 발행하거나 仲介銀行 앞으로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의 준거법은 통상 은행이 매도인의 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이행지의 법률이 적용되며, 중개은행이 스스로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개은행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즉 신용장 당사자

8) 2 Lloyd's Rep. 394, 398, 399.(1981).

9) 2 Lloyd's Rep. 402(1976).

는 신용장의 經濟的 機能의 작용을 염두에 두어왔다.<sup>10)</sup>

영국법에서는 미국의 통일상법전(이하 UCC라 한다.)과는 달리 일찍이 신용장거래 그 자체의 해석이나 취급에 대한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의존해야 하는 것은 준거법의 慣習 내지 慣習法이라고 하고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준거법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여 1995년 UCC에서는 새로운 조항을 신용장자체에 명시하거나 또는 준거법과 법정지 선택조항을 관계당사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sup>12)</sup> 이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法廷地法을 적용하며 또한 동일은행의 지점은 별개로 간주하되 지점 소재지의 법정을 준거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sup>

### III. 法 또는 統一慣習 適用의 二元化

미국에서의 신용장거래 관습은 UCP를 적용하는 타국과의 거래 또는 미국 내 거래에서도 UCC나 UCP 적용상의 法の 衝突 問題가 惹起될 수 있다. 미국 UCC의 신용장 규정은 성문법으로서 신용장거래시 중요한 法源이 되고 있다. 특히 미연방의 통일상법전에 기초를 두어 각 주는 나름대로의 商法典을 立法化하여 신용장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뉴욕(New York) 주는 UCP가 UCC와 경합이 될 경우 UCP를 우선시키는 별도의 변형조항을 설정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앨라버마(Alabama), 미주리(Missouri) 그리고 애리조나(Arizona) 주의 입법 역시 같다.<sup>15)</sup>

10) H.C. Gutteridge,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imited, London, 1984, p. 6.

11)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New York, 1976, p. 51.

12) UCC, Article 5-116(a)(1995).

13) UCC, Article 5-116(b)(1995).

14) The New York version of the UCC Article 5-102(4): "Unless otherwise agreed, this Article 5 does not apply to a letter of credit or a credit if by its terms or by agreement, course of dealing or usage of trade such letter of credit or credit is subject in whole or in par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by the Thirteenth or by any subsequent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5) Ala. Code §7-5-102(4)(1993); Mo. Rev. Stat. §400.5-102(4)(Version Supp.

실제 대부분 국제거래시 UCP나 기타 관습이 援用되기 때문에 인수 및 지급과 관련되어 상이한 법적 의무로 야기되는 분쟁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美國法協會(American Law Institute)는 뉴욕주의 현행법 하에서 UCP를 원용하는 신용장은 어떠한 관점에서든 UCC 제5편에 의하여 準據가 되지 아니한다<sup>16)</sup>고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다.

뉴욕시의 은행들은 UCC가 UCP를 준거로 하여 확립된 신용장거래에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은행들의 요청에 의하여 입법화하게 된 것이다.<sup>17)</sup>

*Western International Forest Products, Inc. v. Shinhan Bank* 사건<sup>18)</sup>에서 UCP는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신용장거래시 합의에 의하여 準據法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UCC에 대한 뉴욕주의 變形立法으로 인하여 뉴욕 UCC는 UCP를 원용하는 신용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뉴욕상법전은 UCP를 준거법으로 삼는 당사자에게 UCC는 신용장에 적용되지 않는다.<sup>19)</sup> 미국법원은 비록 UCC가 UCP와 충돌이 없다하여도 UCC 조항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Ross Bicycles, Inc. v. Citibank N.A.* 사건<sup>20)</sup>에서 根據契約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 UCC를 준거로 결정한 것은 UCP에 근거한 신용장의 목적과 충돌된다고 판시한 것은 UCC가 근거 계약에 정한 신용장상의 救濟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示唆하는 것이다.

또한 *Boston Hides & Furs, Ltd. v. Sumitomo Bank, Ltd.* 사건<sup>21)</sup>에서 뉴욕주 법하에서 당사자가 UCP를 준거법으로 삼았다면 UCP가 적용되지만 UCP에 대한 무언급이나 모호할 경우에는 UCP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한 UCC의 유사한 규정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법협회의 UCC에 대한 공식견해<sup>22)</sup>에 의하면 UCC 제5편

1994); Arig. Rev. Stat. Ann. §47-5102[D](1998).

16)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s*, Article 5-116. Choice of Law and Forum Official Comment.

17) *Ross Bicycles, Inc. v. Citibank, N.A.*, 24UCC Rep. Serv. 2d 169, 613 NYS2d 538(1994).

18) 24 UCC Rep. Serv. 2d 998, 860 F. Supp 151, 93 Cir 7301(SD NY. 1994).

19) *Shanghai Commercial Bank v. Bank of Boston International*, 19 UCC Rep. Serv. 1202, 53 AD 2d 830; *Decor by Nikkei Intern v. Nigeria*, 33 UCC Rep. Serv. 1059, 497 F. Supp. 893, 907(S.D. N.Y. 1980).

20) 24 UCC Rep. Serv. 2d 196, 201(NY Supp. Ct. 1994).

21) 25 UCC Rep. Serv. 2d 896, 870, F. Supp. 1153 (D Mass. 1994).

과 UCP 관련조항간에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UCC 및 UCP 모두 적용된다고 하였다.

위의 *Boston* 사건 및 *Ross* 사건에 대한 판결과 미국법협회의 공식견해를 고려할 때 특히 사기방지에 대한 예외 규정이 UCP에는 언급이 없으나 UCC에는 입법화되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의 UCC의 제 5-109 조 詐欺와 偽造 관련 규정이용도 어떤 측면에서는 용이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돌란(Dolan) 교수는 이와 같은 뉴욕주의 UCC의 변형 적용은 UCC와 UCP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하고 또한 두 법원의 상이한 疑問點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불행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로 어떤 당사자는 UCC의 具體性和 신용장 발행시기 및 효과에 대한 명확성, 제시인의 擔保(warranties)에 대한 분명한 규정, 부당한 인수, 지급거절시의 救濟(remedies)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고려하면 UCC를 選好할 것이지만, 반면 UCC에 무언급되고 있는 수량 및 금액, 운송서류, 해상선화증권과 같은 UCP의 구체적인 규정을 犧牲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23)</sup>

실제 미국 내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로 UCC를 排除하고 UCP를 적용하지 않는 한, UCC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sup>24)</sup> 이와 같은 준거법선택의 문제를 고려하여 1995년 UCC에서는 새로운 조항을 신용장자체에 명시하거나 또는 UCC에 의하면 준거법과 법정지 선택조항을 관계당사자가 별도 합의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sup>25)</sup> 이와 같은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법정지법을 적용하며 또한 동일은행의 지점은 별개로 간주하되 지점 소재지의 법정을 준거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신용장거래시 신용장발행의 기초는 근거계약에 있으므로 지역 또는 국제성 등을 고려하여 UCP 또는 UCC 적용상의 이원화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22) American Law Institute, *op. cit.*, Article 5-116.Official Comment.

23) John F. Dolan, *op. cit.*, p. 4.05.

24) Boris Kozolchyk, "Legal Aspects of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Secured Transactions", *Lawyer of the America Journal of Int'l Law*, 1979, p. 270.

25) UCC, Article 5-116(a)(1995).

26) UCC, Article 5-116(b)(1995).



#### IV. 主要 爭點에 대한 比較

##### 1. 書類審査 基準과 一致性 判斷

신용장과 提示書類에 대한 서류심사 및 일치성 판단은 신용장대금 支給 與否를 결정짓는 중요한 尺度가 된다. 신용장의 서류수리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많은 판례들은 嚴密一致의 原則<sup>27)</sup>(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適用과 相當一致의 原則<sup>28)</sup>(doctrine of substantial compliance) 適用으로 兩分되어 왔다. 미국의 다수 法院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9)</sup>

엄밀일치의 원칙적용이나 상당일치의 원칙적용은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신용장의 本質을 歪曲시키거나 상거래의 원활을 기하는데 逆機能을 招來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UCP나 UCC도 각각 서류심사 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UCP<sup>30)</sup>에서는 “규정된 서류의 文面上 신용장 제조건과의 일치성은 본 규칙

27) *Airlines Reporting Corp. v. Norwest Bank, NA*, 529 NW 2d 449(Minn. Ct. App. 1995); *Mueller Co. v. South Shore Bank*, 991 F 2d 14 (1st Cir. 1993); *Banco Do Brasil, SA v. City National Bank*, 609 So. 2d 689(Fla. Dist. Ct. App. 1992); *Alpargatas, SA v. Century Business Credit Corp.*, 583 NYS 2d 441(1992); *Lease America Corp. v. Norwest Bank Duluth, NA*, 940 F2d 345(8th Cir. 1991); *N & C Properties v. AmSouth Bank, NA*, 558 So. 2d 906(Ala. 1990); *Occidental Fire & Casualty Co. of N. Am v. Continental Bank, NA*, 918 F2d 1312(7th Cir. 1990); *Newvector Communications, Inc. v. Union Bank*, 663 F. Supp. 252(D. Utah 1987); *Armac Indus. Ltd. v. Citytrust*, 203 Conn. 394, 525 A2d 77 (1987); *Mercantile-Safe Deposit & Trust Co. v. Baltimore County*, 309 Md. 668, 526 A2d 591 (1987); *Equitable Trust Co. v. Dowson Partners*, 27 Lloyd's List LR 49 (1927).

28) *Mannesman Handel AG v. Kaunlaran Shipping Corp.*, 1 Lloyd's Rep. 89 (1993); *New Braunfels Nat. Bank v. Odiorne*, 780 SW2d 313 (Tex. Ct. App. 1989); *Tosco Corp. v. Federal Deposit Ins. Corp.*, 723 F2d 1243 (1983); *Talbot v. Bank of Hendersonville*, Tenn. App. 496 S.W. 2d 548 (1973); *Soproma, S.P.A. v. Marine & Animal By-Products Corporation Ltd*, 1 Lloyd's Rep.367 (1966); *Laudis v. American Exchange National Bank*, 239 N.Y.234 (1924).

29) John F. Dolan, *op. cit.*, p. 6.02; Robert M. Rosenblith,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p. 175; Roy Goode,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p. 6.

30) UCP 500, Article 13-a (1993).

에 반영되어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따라 결정된다”(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UCC<sup>31)</sup>에서는 “신용장 發行人은 정식으로 신용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標準慣行을 遵守하여야 한다.”(An issuer shall observe 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itutions that regularly issue letters of credit)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의 신설은 양분된 원칙적용을 ‘표준관행’에 의하여 풀어가자는 공통된 고충의 산물로 보인다.

UCP에서는 書類審査基準(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이라는 細部條項에 위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UCC에서는 발행인의 權利와 義務(Issuer’s Rights and Obligations)라는 조항에 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 신설과 관련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見解<sup>32)</sup>를 살펴볼 때 UCP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의 導入은 서류를 심사할 때 相當한 注意를 다 하여야 하는 은행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가 적용되는 範圍를 決定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UCP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은 제 37 조 C 항과 같이 送狀上의 물품명세와 기타 서류들의 명세를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UCP 상에 體系化 되어있다. 즉 “상업 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반면에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일반용어로 표기될 수 있다.”는 것은 국제표준은행관행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법협회의 公式 見解<sup>33)</sup>를 보면 이 조항은 해설자들이 언급하는 이른바 상당일치 기준보다는 오히려 엄밀일치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엄밀일치라고 하여 신용장조건에 盲目的인 一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본 조항은 엄밀일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표준관행의 채택에 의하여 *New Braunfels Nat. Bank v. Odiorne* 사건<sup>34)</sup>에서와 같이 법원이 수익자가 ‘Letter of Credit No.86-122-5’대신에 ‘Letter of Credit No. 86 - 122 - S’로 기재되어

31) UCC, Article 5-108(e)(1995).

32) Charles del Busto, *op. cit.*, pp. 39~40.

33) American Law Institute, *UCC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 1995, Article 5-108, Official Comments.

34) 780. SW 2d 313(Tex. Ct. App. 1989).

지급을 요청한 환어음에 대하여 엄밀일치라는 것은 가혹한 完璧主義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한 것을 確認하여 주고 있다.

표준관행과 관련된 확인과 결정은 陪審員이 아닌 법원의 판단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 표준관행은 신용장 발행인과 발행의뢰인간의 합의나 관습에 의하여 발행인을 그밖에 있을지 모를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sup>35)</sup>

또한 ICC에서 발행인은 신용장 기간 이내에 引受, 支給하거나 인수 지급거절의 근거가 되는 불일치를 제시인에게 통지하여야할 제 7 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당한 기간을 가진다. 만일 발행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그 제시가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같이 排除的인 효과와 관련된 개정은 UCP의 제 13 조와 제 14 조의 내용을 따른 것이다.

발행인의 표준관행 준수 결정은 그 표준관행의 증거에 기반을 둔 '法院을 위한 解釋의 問題'이다. 따라서 경험 많은 신용장 서류 검토자의 견해는 관행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sup>36)</sup>

그러나 UCP나 UCC에서도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돌란 교수는 UCP에서의 서류일치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현존하는 미국 관행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 모르며 혹자는 본 조항이 유행의 변화를 試圖하는 것으로 결론지을지도 모른다고 평하고 있다.<sup>37)</sup>

이 規定을 두고 볼 때 UCP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표현으로 서류심사기준을 설정하고 그 관행은 UCP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심사기준의 범위를 은행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UCC는 신용장발행인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아닌 금융기관의 표준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원의 판단문제로 돌리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상거래 분쟁은 判例法에 의존하여 법원의 先 判決을 중시하는 경향과 保證信用狀이 미국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관행을 주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해석범위를 판례법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American Coleman Co. v. IntraWest Bank*, 887 F 2d 1382(10th Cir. 1989).

36) James G. Barnes and James E. Byrne, "Revision of U.C.C. Article 5", *The Business Lawyer*, Vol. 50, August 1995, p. 1454.

37) John F. Dolan, *op. cit.*, p. 4.06[2][g].

## 2. 無書類 條件

無서류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이란 신용장발행인이 어떤 사실(일반적으로 근거계약의 이행과 관련되어)의 獨立的인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sup>38)</sup>

여기서 條件(conditions)은 장래에 발생하여야 할 불확실한 조건을 의미한다. UCP나 UCC도 무서류 조건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의 당사자는 서류와 신용장 사이의 관련성과 일치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하는 것으로 서류거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UCP<sup>39)</sup>에서는 “신용장이 그와 일치하게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言及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하고 이를 無視한다.”고 무서류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UCC<sup>40)</sup>에서는 무서류조건에 대하여 “만일 신용장을 구성하는 약약이 무서류조건을 포함한다면 발행인은 무서류조건을 무시한다. 만일 무서류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CP 제5차 개정과 관련하여 무서류 조건에 대한 버스토(Busto)의 見解를 보면 만일 무서류조건이 사소한 것이라면 발행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오직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의 일치성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서류조건이 매우 중요한 것인 경우에 그것을 무시하고 신용장 거래를 행하였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개별서류로 ‘런던에서 홍콩까지의 선적’ 또는 인코텀즈에 따른 ‘CIF Hong Kong’ 등의 조건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은 충족되어야 하고 제시된 서류에 언급되어야 한다.<sup>41)</sup>

해상운송의 경우 海上船貨證券은 선적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중요서류인데

38) Sandra Stern, “Varying Article 5 of the UCC by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6, Warren, Gorham & Lamont Publication, June 1997, p. 526.

39) UCP 500, Article 13-c(1993).

40) UCC, Article 5-108(g)(1995).

41) Charles del Busto, *op. cit.*, p. 42.

도 예컨대 신용장이 상업송장과 包裝明細書를 요구하고 선적은 11월 30일 까지 런던에서 홍콩까지 이루어 져야하며 가격조건은 'CIF Hong Kong'으로 명시되었다고 가정할 때 해상선화증권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증권이 무언급 되었기 때문에 위의 규정대로 발행인(은행)이 무시하고 제시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서류만을 가지고 제시된 대로 지급이행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UCP가 화환신용장의 본질은 서류거래라고 전제하고 주로 화환신용장 취급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무서류조건외의 문제점에 대한 混亂은 야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보증신용장에 의한 상거래가 많기 때문에 UCC에서의 무서류 조건의 의미는 실제 거래 관행에 부합될 지도 모른다.

### 3. 詐欺의 適用

UCC는 詐欺의 例外 適用原則을 인정한 판례, 즉 *Szte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oration* 사건<sup>42)</sup>을 發端으로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이 원칙을 繼承하여 오고 있다.<sup>43)</sup> UCC는 증전 제 5-114 조 (2)의 사기에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사기 예외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신용장 발행의뢰인이 요구된 서류가 偽造(forged) 또는 重要的 詐欺(materially frau-

42) 31 NY. S. 2d 631(Cupp. Ct. 1941).

43) *Itek Corp. v. First Nat'l Bank*, 730 F2d 19 (1st Cir. 1984); *Rockwell Int'l Sys., Inc. v. Citibank, NA*, 719 F2d 583 (2d Cir. 1983); *Harris Corp. v. National Iranian Radio & Television*, 691 F2d 1344 (11th Cir. 1982); *Sabolyk v. Morgan Guar. Trust Co.*, Rep. Serv. (Callaghan) 1008 (ND Ohio 1984); *Larson v. First Interstate Bank* 603 F. Supp. 467 (D. Ariz. 1983); *Roman Ceramics Corp. v. Peoples Nat'l Bank*, 517 F. Supp. 526 (MD Pa. 1981), aff'd, 714 F2d 1207 (3d Cir. 1983); *Baker v. National boulevard Bank*, 399 F. Supp. 1021 (ND Ill. 1975); *Originala Petroleum Corp. v. Beta Fin. & Inv. Corp.* (In re Orihinala Petroleum Corp.), 39 BR 1003 (Bankr. ND Tex. 1984); *Professional Modular Surface, Inc. v. Uniroyal, Inc.*, 108 Ill. App. 3d 1046, 440 NE2d 177 (1982); *Stringer Constr. Co. v. American Ins. Co.*, 102 Ill. App. 3d 919, 430 NE2d 1 (1981); *First Arlinton Nat'l Bank v. Stathis*, 90 Ill. App. 3d 802, 413 NE2d 1288 (1980).

44) UCC, Article 5-109 (b)(1995): "If an applicant claims that a required document is forged or materially fraudulent or that honor of the presentation would facilitate a material fraud by the beneficiary on the issuer or applicant,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may temporarily or permanently enjoin the issuer from honoring presentation or grant similar relief against the issuer or other persons only if the court find that..."

dulent)가 있거나 또는 제시서류에 대한 지급이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의뢰인에게 중요한 사기를 조장할 경우에는 管轄法院의 禁止命令(injunction)을 통하여 법적 救濟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신용장 書類上의 詐欺와 신용장 去來上의 詐欺를 구분하고 있다.

이 조항은 暗默的으로 발행인에게 서류상의 사기와 거래상의 사기에 대하여 지급거절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up>45)</sup>

그러나 *All Service Exportacao, Importacao, S.A. v. Banco Banerindus Do Braz, S.A.* 사건<sup>46)</sup>에서 검정콩의 선적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買受人은 賣渡人을 受益者로 하여 은행에서 取消不能信用狀을 발행하였다. 선적물품이 도착 이전에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와 환어음을 발송하였고, 은행이 受理하였다. 선적물품이 도착된 이후 콩이 실제로 곰팡이가 되어 사람이 소비하는데 不適合하였다. 매수인은 거래상의 사기라고 하면서 신용장에 의한 지급금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환어음의 지급금지를 거절하였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이미 환어음을 引受하였으므로 제 5-114(2) 조에 의한 사기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사기의 예외적용은 명백한 證據가 立證될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引受하기 以前에 限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편 *Habib Bank Ltd. v. Convermat Corp.* 사건<sup>47)</sup>에서 법원은 瑕疵書類에 대해서도 이미 지급을 받은 수익자에 대하여 발행인의 擔保違反(breach of warranty)<sup>48)</sup>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동사건에서의 대금상환청구는 통일관습인 UCP 조항<sup>49)</sup>과 충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UCP 조항에서는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불일치되는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에 맡겨 보관하거나 그 제시인에게 返送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クレ임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독립성 및 신용장 引受 및 支給의 最終性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예외는 위조를 포함한 사기서류 제시와 관련된 것이다. UCC<sup>50)</sup>는 중요한 사기

45) John F. Dolan, *op. cit.*, 4.06[2][e].

46) 13 UCC Rep. Serv. 2d 469, 921 F2d 32(1990).

47) 145 Misc. 2d 980, 554 NYS2d 757(App. Term 1990).

48) UCC, Article 5-111(1988); UCC, Article 5-110(1995).

49) UCP 400, Article 16-e (1983); UCP 500, Article 14-e (1993).

50) UCC, Article 5-109(1995).

가 인수 및 지급에 대한 抗辯으로서 발행인에 의하여 제기되거나 발행의뢰인에 의하여 주장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지명령이 어음이 인수된 이후에도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지 않음을 前提로 가능한가의 여부는 그러한 구제가 인수된 어음이나 延支給 의무와 관련된 준거법 하에서 허용되느냐 또는 금지되느냐 與否에 달려 있다.<sup>51)</sup> 따라서 금지명령은 사기에 대한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해져서는 안되는 것이 UCC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UCP에서는 사기에 대한 예외규칙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書類의 效力에 대한 조항<sup>52)</sup>에서 “은행은 어떠한 서류이든 그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 또한 은행은 어떠한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UCP 상에는 은행의 免責條項(disclaimer clause)을 설정하고 있을 뿐 위조 또는 사기서류에 대하여 예외적인 지급거절이 인정된다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국내법의 준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UCC 제 5편<sup>53)</sup>이 적용되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普通法(common law)이 적용된다.<sup>54)</sup>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는 “偽造된 것으로 判明된 선화증권을 송부한 매입은행은 서류의 유효성에 따른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호는 받지만, 단 매입은행이 위조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제시 전에 위조된 것을 認知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서류의 文面上 위조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이다.”<sup>55)</sup>라고 하여 사기적용에 대한 有權解釋을 내린 바가 있다.

#### 4. 信用狀 讓渡와 代金の 讓渡

讓渡(transfer)라는 용어는 受益者의 權利의 移轉을 의미한다.<sup>56)</sup> 따라서 신용

51) James G. Barmes and James E. Byrne, *op. cit.*, pp. 1455~1456.

52) UCP 500, Article 15(1993).

53) UCC, Article 5-114(1995).

54) Ross P. Buckley,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 Economics*, Vol. 28, 1995, p. 303, note 267.

55) ICC, *Documents 470/371, 470/373*, December 9, 1980.

56) American Law Institute, *op. cit.*, Article 5-112, Official Comment.

장 양도는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발행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며<sup>57)</sup> 更改(novation) 또는 受益者의 代替(substitution of beneficiary)와 類似하다.<sup>58)</sup>

UCC는 신용장의 양도(transfer of letter of credit), 法の 運用에 의한 양도(transfer by operation of law)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신용장의 양도규정에서는 신용장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수익자만이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발행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추가로 발행인 또는 신용장에서 양도이행을 수권받은 다른 자가 신용장조건, 표준관행, 법적인 금지 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요구조건에 근거한 양도가능 신용장 하에서 의도된 양도를 인정하거나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법의 운용에 의한 양도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를 표시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운용에 의한 양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조항은 법에 따라 그 承繼人이 지정된 수익자의 명의로 법의 운용에 의하여 행한 어음발행을 사기가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이 조항은 신용장 관행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승계자의 명의로 어음발행과 수익자의 환어음 발행권리에 대한 虛偽承繼請求의 위험 및 결과에 대한 발행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代金の 讓渡 규정에서는 신용장대금은 신용장 하에서의 인수 및 지급이나 代價 提供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행인 또는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대가를 제공하는 다른 자가 讓受人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발행의뢰인의 承諾 또는 신용장상 어떠한 기재의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용장 대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서는 발행인, 확인인, 기타 지정인, 수익자 및 신용장이 허용하는 제 2수익자 사이에서의 신용장 대금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59)</sup>

*Algemene Bank Nederland, N. V. v. Soysen Tarim Urunleri Dis Ticaret Ve Sanayi, A. S.* 사건<sup>60)</sup>에서 신용장 양도가 아닌 신용장대금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가능성에 대한 신용장의 침묵, 즉 '讓渡可能'(transferable)과 같은 文言有無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UCP에서는 양도에 관한 규정을 讓渡可能信用狀(transferable credit)<sup>61)</sup>과 代

57) John F. Dolan, *op. cit.*, p. 4.06[2][d].

58) American Law Institute, *op. cit.*, official comments ; 757F. Supp. 938(ND Ill. 1991).

59) James G. Barnes and James E. Byrne, *op. cit.*, p. 1458.

60) 13 UCC Rep. 2d 834, 748F. Supp. 177(S.D.1990).



金の 讓渡(assignment of proceeds)<sup>62)</sup>로 구분하고 있으며, UCP는 UCC보다도 훨씬 상세한 양도문제를 다루고 있다.<sup>63)</sup> 또한 UCP는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될 수 있다.”와 같이 讓渡回數의 制限<sup>64)</sup>을 두고 있으나 UCC에서는 명확한 제한이 없다.

또한 UCP에서는 신용장은 신용장금액, 물품단가, 신용장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도가능신용장인 원신용장의 제조조건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sup>65)</sup>하고 있으나 UCC에서는 비록 양도 가능한 신용장일지라도 양도가 준거법 위반 또는 신용장에 명시된 요구조건과 불일치 할 경우에는 발행인은 양도의 인정이나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sup>66)</sup> UCC에서는 UCP보다 包括的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하겠다.

1974년 개정 때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擔保附去來(secured transactions)<sup>67)</sup>를 반영하여 UCP에서도 대금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sup>68)</sup>을 간결하게 설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오직 대금의 양도에만 관련이 있고, 신용장의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금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원수익자이며,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양수인이 된다. 반면 신용장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건이 행자나 대금청구의 당사자는 모두 讓受人이 된다.

하필드(Harfield)는 신용장 대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은 대금의 수익만을 양도받고 이행의무는 양도받지 않으며, 만일 원수익자가 신용장의 제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아무 것도 지급 받지 못한다.”<sup>69)</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용장대금의 양도는 신용장 자체의 양도와는 相異하며 양수인은 대금에 관한 권리만 양수받을뿐 當該 신용장에 의한 선적 또는 서류작성에 대한

61) UCP 500, Article 48(1993).

62) UCP 500, Article 49(1993).

63) Katherine A. Barski, "Letters of Credit: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r Law Review*, Vol.41, winter 1996, p. 755.

64) UCP 500, Article 48-g(1993).

65) UCP 500, Article 49-h(1993).

66) UCC, Article 5-112(b)(1995).

67) UCC, Article 9-203(1), 9-305, 9-306(2)(3)(1995).

68) UCP 500, Article 49(1993).

69) Henry Harfield,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p. 191.

의무는 원수익자에게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의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으나, 양수인의 입장에서 대금회수는 전적으로 양도인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기 때문에 대금회수가 완전히 保障된다고는 볼 수 없다.<sup>70)</sup> 이처럼 신용장대금의 양도는 신용장 수익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讓渡契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간의 相互 信賴가 前提되어야 한다.

## V. 結 論

국제상거래에서의 신용장거래는 대부분 UCP를 準據로 발행되어 당사자간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미국은 UCC를 立法化하여 統一商法典 제 5편에 독자적인 신용장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美國 法院의 판례를 살펴 볼 때 UCC에 준거하거나 UCC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뉴욕주 등 4개 주는 UCP가 UCC와 競合될 경우에는 UCP를 우선시키는 별도의 變形條項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UCC와 통일관습인 UCP 적용에 있어 二元化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UCC와 UCP 적용상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爭點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장의 書類審査 基準과 一致性 判斷에 대한 입장이 다소 相異하다. UCC는 '金融機關의 標準慣行'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반하여 UCP는 UCP에 반영되어 있는 '國際標準銀行慣行'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발행인의 표준관행 준수 결정을 서류검토자의 관행뿐만이 아닌 判例法과 연관시켜 '法院의 判斷 問題'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UCP는 서류심사 기준과 일치성 판단을 UCP 조항에 근거하여 UCP에 反影되어 있는 규정과 과거의 업무관행과 연관시켜 '銀行 內에서 解決'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무서류 조건에 대하여 UCC와 UCP간에는 적용상의 見解 差異가 있다. 미국 내에서는 주로 保證信用狀에 의한 거래가 普遍化 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인이 서류 없이 債務履行에 대한 確約을 구성하는 무서류 조건이 포함될 때 無視되어서도 큰 문제는 惹起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UCP는 書類去來를 기본으로 하는 입장에서 무서류 조건이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장의 本

70) Charles del Busto, *op. cit.*, p. 131.

質을 歪曲시킬 수 있다.

셋째, 詐欺의 例外 適用에 대하여 UCC에는 規定되어 있으나, UCP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UCC는 발행인이나 발행의뢰인에게 重要한 詐欺(materially fraudulent)를 助長할 경우에는 管轄法院의 禁止命令(injunction)을 통하여 法的 救濟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지명령이 사기에 대한 抗辯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하여 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趣旨를 UCC에 立法化 하고 있다. 그러나 UCP는 서류의 효력에 대한 銀行의 免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기의 예외 적용문제는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에 비중을 두어 모든 것을 法廷으로 돌리고 있다.

넷째, 信用狀 讓渡에 대하여 UCC는 包括的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UCP는 양도요건, 양도방법등 詳細한 양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代金の 讓渡에 대해서는 미국이 擔保附去來(secured transactions)를 反影하여 UCC가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UCP는 오직 代金の 讓渡가 허용될 수 있는 규정만을 설정하고 있다.

UCC와 UCP 적용상의 爭點에서 발견된 問題點에 대한 對應課題를 다음과 같이 提案한다.

첫째, 신용장당사자의 根據契約에 地域이나 國際性 등을 고려하여 신용장 準據規定을 명확히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무서류조건에 관련된 無視 規定은 기본서류를 포함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류 이외에는 무시할 수 있도록 그 範圍를 設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서류심사 기준인 이른바 '標準銀行慣行'에 대하여 보다 具體的인 지침을 補充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UCP에도 UCC처럼 신용장의 本質을 해치지 않는 最小限의 範圍내에서 信用狀 獨立性의 原則 適用의 예외가 될 수 있는 詐欺適用 原則을 導入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이는 신용장을 惡利用하는 사기로부터 발행인(은행)과 발행의뢰인을 保護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American Law Institute, *Uniform Commercial Code*, Revised Article 5 Letters of Credits, 1995.
- Barnes, James G., "Internationalization of Revised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Winter 1995.
- \_\_\_\_\_ and Byrne, James E., "Revision of U.C.C. Article 5", *The Business Lawyer*, Vol. 50, August 1995.
- Barski, Katherine A., "Letters of Credit: A Comparison of Article 5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Loyolar Law Review*, vol. 41, Winter 1996.
- Buckley, Ross P., "The 1993 Revision of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George Washington Journal of International & Economics*, Vol. 28, 1995.
- Busto, Charles del, *Documentary Credits UCP500 & 400 Compared*, ICC Publishing S.A., 1993.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llen, Gorham & Lamont, 1996.
- Goode, Roy, "Abstract Payment Undertaking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No. 1, 1996.
- Gross, Ronald S. and Veltri Stephen C., "The Uniform Commercial Code Survey", *The Business Lawyer*, American Bar association, August 1995.
- Gutteridge, H.C., and Megrah, Maurice,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imited, London, 1984.
- Harfield, Henry, *Bank Credits and Acceptances*, 5th ed., The Ronald Press Company, 1974.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 Kozolchy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mpany, New York, 1976.
- \_\_\_\_\_, "Legal Aspects of Letters of Credit and Related Secured Transactions", *Lawyer of the America Journal of Int'l Law*, 1979.

- Meyero, Wits Steven A., *Banking Law Journal Digest*, 8th ed., 1997 Cumulative Supplement No. 1, Warren, Gorham & Lamont, 1996.
- Quinn, Thomas M., *Quinn's Uniform Commercial Code Commentary and Law Digest*, 2nd ed., Warren, Gorham & Lamont, 1996.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s of Credit Law", *Uniform Commercial Law Journal*, vol. 21, Fall, 1988.
- Stern, Sandra, "Varying Article 5 of the UCC by Agreement." *The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6, Warren, Gorham & Lamont Publication, June 1997.
- Uniform Commercial Code Case Digest*, Clark Boardman Callaghan, 1995.
- White James J.,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UCC",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16, No. 2, Winter 1995.

ABSTRACT

**Issues on Application between Letters of Credit Provisions of  
the UCC and the UCP**

Kang, Won Jin

Although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UCP) is not a law, it applies to most documentary credits and is binding on all parties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Besides, Uniform Commercial Code(UCC) Article 5 was codified by the United States and was adopted by every state. Moreover, the New York version of the UCC Article 5-102(4) specifically providing that the UCC does not apply to letters of credit where the parties agree to be governed by the UCP. Identical nonuniform Articles were latter added in Alabama, Arizona, and Missouri. The fact that courts in forty-six of the fifty states are bound by Article 5. Until now, Article 5 of the UCC has probably had an impact on the decisions in New York and the New York common law.

Therefore, I examined a few issues on application between Article 5 of the UCC and the UCP.

First, although the UCP attempt to introduce a new for examination of document by incorporating “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the standards for documentary compliance are not clear. The UCC attempt to rely on the matter of interpretation for the court, but the UCP would probably be interested in examining in about bank’s internal practices as reflected in UCP Articles.

Second, the rule for nondocumentary conditions is a useful for stand-by credit transactions under the UCC, but these conditions would probably put

the bank in an even worse position in case of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s under the UCP.

Third, the UCP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 governing the fraud exception, but the UCC codified the fraud and forgery rules developed through American case law.

Fourth, the UCP treats the issue of transfer in much more detail than the UCC does. In contract, the UCP's treatment of assignment of proceeds is brief.

Finally, I suggest that the fraud exception rule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UCP in order to protect the issuing bank and the applicant when an unscrupulous party attempts to defraud.

|                                          |
|------------------------------------------|
| Key Words : UCP, UCC, Letters of Credit. |
|------------------------------------------|